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중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41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진중오 · 서천호 · 최은석
고동진 · 김용태 · 안철수
김상훈 · 김소희 · 정연욱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담금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분야의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용이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별도의 예방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을 “1만분의 75 이상 1만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만분의 35”를 “1만분의 7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①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2.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u>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u>1만분의 35</u> 이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 ----- ----- ----- ----- ----- ----- ----- ----- ----- <u>1만분의 75 이상 1</u>

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열악하거나 건전화 평가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만분의 35 미만의 비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만분의 100----- ----- ----- ----- -----. ----- ----- ----- ----- ----- -----. ② ----- ----- ----- ----- ----- ----- ----- ----- ----- ----- ----- ----- -----1 만분의 75----- -----. ③ ~ ⑩ (현행과 같음)
--	--